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제안경위

### 1.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박기열 의원 외 28명

나. 의안번호 : 제2443호

다. 제출일자 : 2021. 5. 27.

라. 회부일자 : 2021. 6. 1.

### 2. 우형찬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우형찬 의원 외 20명

나. 의안번호 : 제2465호

다. 제출일자 : 2021. 5. 27.

라. 회부일자 : 2021. 6. 1.

## II. 제안사유

### 1.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안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기초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2020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에 그치는 열악한 실정임.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주차장 요금 할인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2. 우형찬 의원 대표발의안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 운영·관리하는 핵심 기반시설임.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조성되나 장비 중심의 시설물로 상주하는 인력이 적고 교통유발효과가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데이터센터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데이터센터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완화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587호, 2021. 3. 30.)되었는 바 「주차장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조례에서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Ⅲ. 주요내용

#### 1.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 함.(제7조제1항제7호의2)

#### 2. 우형찬 의원 대표발의안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  $m^2$ 당 1대로 정함.(안 별표2 제9호 신설)

### Ⅳ. 참고사항

#### 1.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4. ~ 2021. 6. 11.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sup>1)</sup>

###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 교통시설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행 중임
- 아울러, 시 정책적 차원에서 당면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다둥이 카드 소지자 및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등에 대해 감면 지원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주차요금 감면은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복지지원 측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확인 방법 등 운영시스템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필요
-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50% 감면 시 연간 8,472천원 주차요금 수입 감소 예상됨(시간주차 3,984천원, 정기권 4,488천원)

※ '21. 3월 기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급여 지원대상 가구수 : 5,893가구

## 2. 우형찬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건축법」

1) 주차계획과-6609호(2021.6.7.)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4. ~ 2021. 6. 1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sup>2)</sup>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규정하고 있으며,
- 상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21.3.30)으로 ‘데이터센터’ 주차장 설치기준(400㎡당 1대) 신설되어 서울시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동의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 요청 공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진흥과-1007(’21.5.31)

▶ 데이터센터는 IT 장비가 집적된 건물로 상주 인원이 적음

※ 네이버(춘천) 센터는 총 267면 주차공간 확보하였으나, 11%(30면)만 상시 활용

▶ 정부 디지털뉴딜 정책 추진, 핵심 인프라 데이터센터 활성화 정책 관련임

2) 주차계획과-6609호(2021.6.7.)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1.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한부모가족지원법<sup>3)</sup>」에서 ‘한부모가족’을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정의하고 있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sup>4)</sup>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sup>5)</sup>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복지급여 지원대상’으로 나누어 구분됨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5) 여성가족부고시 제2020-56호 :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참고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

구 분	증명서 발급대상	복지급여 지원대상	비 고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 득 72%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 득 60%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종류 에 따라 일부조건 상이할 수 있음

- 복지급여 종류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등

- '21년 3월 기준 서울시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31,158가구이며,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893가구로 나타남

※ 참고 : 서울시 한부모가족 현황

증명서 발급대상		복지급여 지원대상	
가구수(가구)	가구원수(명)	가구수(가구)	가구원수(명)
31,158	72,047	5,893	19,717

- 서울시내부자료('21.3.)

- 동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서울시 추계에 따르면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8백40천원<sup>6)</sup>의 주차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sup>7)</sup>하고 있고, 타 조례<sup>8)</sup>에서도 한부모가족을 우대하고 있는 등 한부모가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한부모가족 중 '복지급여

6) 시간주차 3,984천원, 정기권 4,488천원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12호, 2010. 1. 7.,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8)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설분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3 :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입장료 무료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  
안의 개정 필요성은 이해됨

- 한편, 동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실질적인 주차요금 할인을 위해서는  
주차장운영자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지원대상자 고시<sup>9)</sup>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sup>10)</sup> 발급대상자(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와 '한부모가족 복지급  
여 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 모두  
증명서 발급<sup>11)</sup>이 가능하여 증명서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임을 구분하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결정 통지서<sup>12)</sup>'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가 현재 적용  
되고 있는 '국가유공자증', '의상자증', '독립유공자증', '보훈보상대  
상자증' 등의 규격<sup>13)</sup>과 달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무인으로 운  
영되는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요금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  
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칙 개정을 통해 준비기간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 주석4 참조

10) 증명서 양식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210mm×297mm[백상지 120g/m<sup>2</sup>])

- 민원24, 정부24 등으로 인터넷 발급 가능

1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은 증명서 발급만 가능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  
득 52%이하인 가족은 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수급이 가능

12) 통지서 양식 :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서식 I-4호[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급여신청시 신청자에게 서면 통지, 인터넷 발급 불가]

13) 85mm×55mm(PET-G카드) 또는 (PVC카드)

## 2. 우형찬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로 마련하는 한편 부칙개정을 통해 동 개정조례안 시행 전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도 해당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서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sup>14)</sup>’을 ‘데이터센터’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sup>15)</sup>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시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에 포함하고 있음

- 한편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주차장법」 제19조<sup>16)</sup>

1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라. <생략>

마. 데이터센터

바. <생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sup>17)</sup>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되 특별시 등은 주차수요 특성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 [별표1]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년 3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sup>18)</sup>되어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에 대해 시설면적 400㎡당 1대씩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규정과 함께 시행령 시행 이전에 조성된 ‘데이터센터’에도 해당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16)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8) 대통령령 제31587호(개정 2021.3.30., 시행 2021.3.30.)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sup>19)</sup>한 실정임

※ 참고 :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사항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2021.3.30.>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신설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되어 시설면적 200㎡당 1대씩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동 개정조례안 적용시 시설면적 400㎡당 1대씩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 설치기준이 완화되며, ‘데이터센터’가 ‘상주인력이 적고 장비 중심의 건축물’이라 주차수요가 적다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참고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구 분	현행 조례 적용시	조례 개정시
적용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 당 1대	○ 시설면적 400㎡ 당 1대

- 아울러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400㎡ 당 1대가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연구된 자료는 별도로 없으나,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1007호(2021.5.31.)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협조 요청의 건

‘KT 용산 데이터센터 신축 교통영향평가<sup>20)</sup>’에 포함된 유사시설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자료를 참고해보면 유사시설의 주차수요(주차발생 원단위)와 동 개정조례안의 설치기준이 어느 정도 유사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유사시설 주차발생 원단위

유사시설	연면적(㎡)	원단위 (대/1000㎡)	원단위 환산 (대/400㎡)
KT분당IDC	31,156.00	2.50	1.00
SK브로드밴드IDC 일산센터	25,041.26	2.88	1.15
SK브로드밴드IDC 분당센터	11,769.56	2.80	1.12

- IDC : Internet Data Center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의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시행 전 설치된 ‘데이터센터’에도 적용하는 부칙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 있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용도의 건축물은 총 6개소<sup>21)</sup>로 파악되며, 향후 법정 주차면수 확보 축소혜택을 위해

20) 2017년 11월 KT 용산 데이터센터(위치 ; 용산구 원효로3가 1-2)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21) 서울시 데이터센터 현황

위 치	건물명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물 주차면수	사 용 승인일
강남구 논현동	엘지유플러스 논현IDC	6,619	2,059	27,967	85	'86.9.8.
서초구 서초동	엘지유플러스 서초1IDC	4,801	2,374	10,665	55	'95.5.10
서초구 서초동	엘지유플러스 서초2IDC	1,413	733	9,737	55	'97.12.24
서초구 서초동	하나로통신인터넷데이터센터	5,057	2,801	35,285	173	'98.11.18
양천구 목동	KT 목동지사 데이터센터	7,693	4,605	50,318	88	'16.11.3
용산구 원효로3가	KT 용산 데이터센터	10,702	5,459	48,722	213	'20.10.15

※ 서울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추출자료(주용도 : 방송통신시설, 건물명 : 데이터 센터)

※ 건축물 주차면수 : 건물별 건축물 대장 자료 참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 부칙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sup>22)</sup>에서는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데이터센터’ 주차수요에 따라 시설면적 기준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2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생략>